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제안이유

○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제1항 단서에 의한 표준금액 미만 수수료의 현실화 계획에 따라「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」를 개정하여 우리군 여건에 맞도록 정비하고,

○ 개별조례로 존재하는「성주군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의한 수수료징수조례」의 수수료는 본 조례에 통합시켜 폐지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제증명 수수료 징수 요율【별표 1】정비 (제3조 관련)

· 신설 : 34종 (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허가 수수료외 33종)

→ 누락 및 폐지조례 관련 수수료 반영

· 변경 : 2종 (화재증명외 1종)

→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표준금액 대로 변경

· 삭제 : 20종 (컴퓨터게임장업외 19종)

→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, 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률 등

※ 기존 162종 → 176종

○「성주군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의한 수수료징수조례」는 폐지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

○ 법률제25522호(대통령령)

-「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」제2조

○「성주군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의한 수수료징수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.

다. 기 타

○ 입법예고 : 2014.11. 25 ~ 12. 15

○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.

○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제1항 단서에 의한 표준 금액 미만 수수료의 현실화 계획에 따라「성주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」를 개정하고, 개별조례로 존재하는「성주군 음반·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수료 징수조례」의 수수료를 본 조례에 통합시켜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

○ 주요 개정 내용은

- 제증명 수수료 징수 요율 중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허가 수수료등 34종을 신설하고, 화재증명 수수료 등 2종을 변경하며, 유기장업 신규영업허가 등 20여종을 삭제하였으며, 「성주군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의한수수료징수조례」에 존재했던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 외 7종을 본 조례에 반영되어 통합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

- 법리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, 자치입법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함으로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성주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제안이유
「지방세기본법」 일부개정(법률 제12152호, 2014. 1. 1.)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코자 함.

3. 주요내용
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“공탁 또는 군금고 예탁”을 “군금고 예탁” 으로 개정 (안 제15조)
※ 채권 소멸시효(10년)로 교부할 금전이 군 금고에 귀속될 수 있도록 개정

4. 참고사항
가. 관계법령 :『지방세기본법』 제72조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.
다. 기타사항
(1) 입법예고 : 2014. 11. 26. ~ 2014. 12. 16(20일간)
(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「지방세기본법」이 개정(2014. 1. 1)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서,
○ 주요 개정 내용은
- 군세 기본조례에서 “공탁”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, 교부금전의 예탁을 군금고로 명시함으로써 체납자, 납세자 등에게 교부할 금전 중 채권 소멸 시효인 10년이 경과하는 금전이 국고가 아닌 군세입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하는 것이며,
-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, 군세입의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성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제안이유
 ○ 상위 법령인「지방세법」개정시마다 자동차세의 “과세표준과 세율”을 개정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표준세율 적용으로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 ○ 자동차세의 “과세표준과 세율”에서 종류별, 영업용・비영업용으로 나열한 것을 상위 법령인「지방세법」에 정한 자동차세 표준세율을 적용하고자 함(안 제24조)

4. 참고사항
 가. 관계법령 :「지방세법」
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.
 다. 기타사항
 (1) 입법예고 : 2014. 11. 26. ~ 2014. 12. 16(20일간)
 (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5. 검토의견
 ○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「지방세법」이 개정될 때마다 자동차세의 “과세표준과 세율”을 개정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상의 표준세율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
 ○ 주요 개정 내용은
 - 군세 조례 제24조에서 자동차 종류별, 영업용·비영업용으로 나열한 것을 지방세법 제127조에서 정한 표준세율로 연계되도록 정비 하도록 하는 개정 조례로서,
 -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등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